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65

발의연월일: 2025. 6. 5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용민·전현희

문정복 • 조계원 • 황운하

김승원 · 김동아 · 민형배

김문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공수처"라 함)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 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,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・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, 공수처 검사・수사관의 신분 불안정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 연속성・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등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.

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·확대하고 공수처가 수 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 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·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,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,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 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 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 의장, 군판사·군검사 등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검찰총장,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 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등).
- 다.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위반, 재산국외도피죄, 국민투표·선거에서의 매수 및이해유도죄를 추가하는 한편, 관련범죄의 범위에 고위공직자·수사기관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, 고위공직자범죄·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추가함

- 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).
- 라.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제3항).
- 마.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, 수사관이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·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제1항·제3항 및 제12조제4항).
- 바.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고소·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명확히 함(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).
- 사.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제기 요구 시점,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, 공수처 검사가 공 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되 공수처 검사에게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카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타목 중 "교육감"을 "교육감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파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장
- 하. 판사
- 러. 군판사 및 군검사
-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"수사기관고위공직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검찰총장
 - 나. 검사
 - 다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
-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죄를"을 "죄(미수범으로 처벌하

는 경우 및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"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"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죄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제359조의 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359조의 죄"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파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파목(종전의 아목) 중 "마목"을 "마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"으로 한다.

- 아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죄
- 자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의 죄
- 차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
- 카. 「국민투표법」 제99조의 죄
- 타. 「공직선거법」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의 죄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"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"란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. 다만, 가족의 경우에 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"죄"를 "죄 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와 「형법」 제3 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"로 하고, 같은 호 나 목 중 "고위공직자"를 "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"로, "죄" 를 "죄 및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의 죄"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"고 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51조제1항"을 "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36조, 제137조, 제151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"고위공직자범죄 수사"를 "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수사"로, "고위공직자범죄와"를 "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"로, "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"를 "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범한 죄"를 "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범한 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제3호와"를 "제3호, 제3호의2 및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카목, 파목,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"를 "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"로, "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"를 "고위공직자범죄등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"를 "연임할 수 있으며"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7급 이상 공무원"을 "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임기는 6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"을 "정년"으로 한다.
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
제12조제4항 중 "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"을 "검찰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"법무부장관"을 "국무총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"를 "다음 각 호의 협조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1.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
- 2.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협조

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요청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제23조 중 "고위공직자범죄"를 "고위공직자범죄등"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"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"을 "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고소·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"으로, "즉시"를 "7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"(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)"를 "(수사처검사 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항 중 "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"을 "수사기관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고소·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" 으로, "사건"을 "7일 이내에 사건"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의 연장 협의 등) 수사처검사는 제3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피의 자를 구속한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203조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제기 요구 시점, 같은 법 제205조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해야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한 때"를 "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으로서 「군사법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는 제외한다)은 관할 군 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검사"를 "검사 또는 군검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. 이 경우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다.

④ 수사처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 로부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수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, 수 사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27조 중 "고위공직자범죄"를 "고위공직자범죄등"으로, "관련범죄"를 "고위공직자범죄등 이외의 관련"으로 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4조(파견공무원 등) ①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·유지,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3항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견자의 결원을 보 충할 수 있다.
 - ③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, 대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검찰청"은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, "검사"는 "수사처검사"로, "법무부장관"은 "처장"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고위공직자"란 다음 각 목의	1
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	
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	
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	
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	
도 포함된다.	
가. ~ 차. (생 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카. 검찰총장	<u><</u> 삭 제>
타.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	타
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	
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	교육감, 시
	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
	의 구청장을 말한다)
파. 판사 및 검사	파.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
	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의
	회의 의장 및 시・군・자
	치구의회의 의장
하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	하. 판사
거. ~ 더. (생 략)	거. ~ 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러. 군판사 및 군검사
<u><신 설></u>	1의2. "수사기관고위공직자"란
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

- 2. (생략)
- 3. "고위공직자범죄"란 고위공 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다만, 가족의 경 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
 - 가. 「형법」 제122조부터 제
 133조까지의 <u>최(다른 법률</u>

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나. 직무와 관련되는 「형법」 제141조, 제225조, 제227조, 제227조의2, 제229조(제225조,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)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

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
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
가. 검찰총장
<u>나. 검사</u>
다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
2. (현행과 같음)
3
죄(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
및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
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
<u> 포함한다)를</u>
가
<u>স্র</u>
나
제359조의 죄

<u>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다. ~ 사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아. 가목부터 <u>마목</u>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

<신 설>

3의2. "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 죄"란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. 다 만, 가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

- 4. "관련범죄"란 다음 각 목의 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 - 가. 고위공직자와 「형법」
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
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
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
 해당하는 죄

- 나. <u>고위공직자</u>를 상대로 한 자의 「형법」 제133조, 제 357조제2항의 죄
- 다.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51조제1항, 제152조, 제154조부터 제 156조까지의 죄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죄
- 라.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 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

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
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
1
가
죄 및 수사기관고
위공직자와 「형법」 제30
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
에 있는 자가 범한 죄
나.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
관고위공직자
<u>죄 및 「정치</u>
자금법」 제45조의 죄
다.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
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
관련된 「형법」 제136조,
제137조, 제151조제1항
라.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
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수

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<u>해당 고위공</u> 직자가 범한 죄

- 5. "고위공직자범죄등"이란 <u>제3</u> 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.
- 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저설치와 독립성) ①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수사처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(생략)
 - 2. 제2조제1호다목, <u>카목, 파목,</u> <u>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</u>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<u>고위공직자범</u> <u>죄 및 관련범죄</u>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
 - ②·③ (생 략)
- 제8조(수사처검사) ①·② (생 전략)
 -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3회에 한정하여 연임

<u>사</u> 고위공
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
위공직자범죄와
<u>해당 고위공</u>
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
직자가 범한 죄
5 <u>제3</u>
호, 제3호의2 및
세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
설치와 독립성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하목에 해당</u>
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
관고위공직자
고위공직자범
<u> 죄등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8조(수사처검사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③
연임할 수 있으며

할	수	있으며,	정년은	63세로	한
다.					

④ (생 략)

- 제10조(수사처수사관) ① 수사처 저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.
 - 1.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
 - 2. <u>7급 이상 공무원</u>으로서 조사,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
 - 3. (생략)

<신 설>

-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, 40명 이내로 한 다. <u>다만, 검찰청으로부터 검찰</u>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 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한다.
- ③ 수사처수사관의 <u>임기는 6년</u> 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은 60세로 한다.

제12조(보수 등) ① ~ ③ (생 략) 저

	
	④ (현행과 같음)
ᅦ	10조(수사처수사관) ①
	<u><삭 제></u>
	2. <u>공무원</u>
	3. (현행과 같음)
	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
	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
	사람으로서 수사처규칙으로
	정하는 사람
	②
	<u><단서 삭제></u>
	③ <u>정년</u>
4]	12조(보수 등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
-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 는 <u>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</u>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.
- 제17조(처장의 직무와 권한) ① 저
 - ② (생략)
 -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<u>법무부장관</u> 에게 의안(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)의 제출 을 건의할 수 있다.
 -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(4)
<u>검찰직공무원</u>
<u>.</u>
세17조(처장의 직무와 권한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국무총리</u>
(4)
4
<u>다음 각 호의 협조</u>
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
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
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1.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
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
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
원 등 수사협조

<신 설>

⑤・⑥ (생략)

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 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,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.

제24조(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) 제24조(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) ① (생 략)

- 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 다.
- ③ ④ (생 략) 제25조(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 제25조(수사처검사 및 수사기관고

- 2.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협조
- ⑤ 제4항에 따라 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요청을 거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처장에게 회신하 여야 한다.
- (6) · (7)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23조(수사처검사의 수사) 수사 제23조(수사처검사의 수사) ----

----- 고위공직자범죄등----

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 ② ----- 고위공직 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 자범죄등 사건의 고소 ·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 -- 7일 이내에 -----
 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에 대한 수사) ① (생 략)

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 야 한다.

<신 설>

제26조(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| 제26조(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) ① 수사처검 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 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 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

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) ① (현행과 같음)

(2) -----

--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 사 건의 고소・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---- 7일 이내에 사건-----

제25조의2(구속기간 및 구속기간 의 연장 협의 등)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203조에 따 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서울중 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 제기 요구 시점, 같은 법 제205 조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해야 한다.

증거물 송부 등) ① -----

----- 하여 공 소제기를 요구하는 때-----

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u><단</u> <u>서 신설></u>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 하는 <u>검사</u>는 처장에게 해당 사 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	<u>다만,</u>
제2조제1호거목에 해당하는	는 고
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]죄등
의 사건으로서 「군사법원	법
제2조제1항제1호에 해딩	하는
사건(같은 조 제2항에 따려	<u> </u>
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	는 제
외한다)은 관할 군검찰부	군검
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	

- ② --------- 검사 또는 군검사-----
-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수사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. 이 경우 공소제기 여부 결 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다.
- ④ 수사처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또는 군 검사로부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수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, 수사인력의 파견 등을 요

제27조(관련인지 사건의 이첩) 처 | 제27조(관련인지 사건의 이첩) --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 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제44조(파견공무원) 수사처 직무 | 제44조(파견공무원 등) ① 수사처 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 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 을 수 있다.

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. --- 고위공직자범죄등-----

--- 고위공직자범죄등 이외의 관련 ----.

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 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・유 지,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 에는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 는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43조제3항 또는 「지방 공무원법 | 제41조제2항에 따 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 견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③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 제47조(다른 법률의 준용) (생략) <신 설> 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 처규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(다른 법률의 준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 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, 대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검찰청"은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, "검사"는 "수사처검사"로, "법무부장관"은 "처장"으로 본다.